

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안내

1. 수수료 및 취득세, 지역개발공채 구입 및 납부

- 1) 증지(수수료) : 전북도 차량 1,000원, 타 시·도 차량 1,500원
- 2) 수입인지 : 3,000원
- 3) 취득세 및 지역개발 공채매입 금액 : 자동차의 등록지역, 차종, 용도,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

2. 구비서류(기본서류 + 추가서류)

1) 기본서류

-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1부
- 의무보험가입증명서(양수인) 및 (구)자동차등록증 원본 각 1부
- 신분증(양수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) 사본 1부
 - ▶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: 법인인감 증명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 1부
- ※ 대리인 신청 시 : 양수인의 신분증 or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) 1부
(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),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, 대리인 신분증 지참

2) 추가서류

가.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

- 자동차 양도증명서 1부
-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: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
(반드시 자동차매수자란에 「양수자의 성명, 주소, 주민번호」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)
 - ▶ 법인이 해산,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.
 - ▶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필요함

나.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

-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: 소유권 공동명의조서(소유자 도장날인) 1부
-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:
 - ▶ 소유권 공동명의조서(인감날인)
 - ▶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
-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:
장애인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자매이어야 하며
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.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(상속기한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)

- 사망(실종)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'실종선고 판결문' 원본 1부
- 상속동의서 및 상속 포기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각 1부
 - ▶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,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.
 - ▶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
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※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(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
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법정대리인 확인) 각 1부 및 인감날인